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64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혼부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일영의원안)	3

I. 개요

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7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25.
- (3) 회 부 일 : 2026. 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

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혼부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정일영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 ☐ <신 설>	☐ 신혼부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신설 (제59조의4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대상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주택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는 경우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 3.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홀벌이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주택요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공제대상: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공제율: 15% ☐ 공제기간 및 한도: 취득일부터 5년간 연 300만원 ☐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현행법 제52조제5항)와 중복 배제 ☐ 시행일: 2027.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6. 3. 26. 발의(의안번호 17764)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특정 비용에 대하여 그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홀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5% (연간 300만원 한도)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세액공제하도록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동 조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현행법 제5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의 중복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주택분양권 포함) 취득을 목적으로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¹⁾ 6억원 이하인 주택(또는 주택분양권)임.

1) 이 때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와는 별도로, 신혼부부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라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혼인율 및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최근 그 건수가 상승하였으나 2025년 기준 24만 326건으로 여전히 2018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²⁾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 5.0건에서 2025년 4.7건으로 약 6%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혼인건수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240,326
조혼인율	5.0	4.7	4.2	3.8	3.7	3.8	4.4	4.7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

자료: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 KOSIS)

또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사이에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³⁾은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2025년 기준 0.80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0.80

자료: 국가데이터처

특히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과 같이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라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지표누리)

둘째,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임.

그러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9.13%이며, 2025년 상승률은 3.65% 등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국	3.1	5.97	4.44	5.02	5.23	5.9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국	19.1	17.2	△18.6	1.52	3.65	9.13

자료: 국토교통부

이처럼 최근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에만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개정안과 같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취득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안정적인 가계 대출을 지원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단기주택저당차입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에 소득공제한도를 우대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출구조를 유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i)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ii)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인 경우에는 1,800만원, 기타의 경우 iii) 800만원이 적용되고, 상환기간이 10년~15년인 경우에는 iv)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에 한하여 600만원이 적용됨.

개정안은 이러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단기주택저당차입금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 가계 대출을 지원

하려는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취지와 부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